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5. 1.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제안이유

○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3조)
-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4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허영훈)

동조례가 제정된 88.5.7이후 준용하는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대통령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어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월액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중복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조항이 있어 운영상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바, 이제부터 이 준용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연계하여 동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지공12500-486('95.12.21)호와 서울특별시 인사 12500-264('96.2.2)호로 자치구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수시로 동 준용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동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지양할 수 있고, 또한 조례개정 형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

제출년월일 : '96.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국내의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제3조)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대통령령 제14857호('95. 12. 29) : 국내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4462호('95. 6. 10) : 국외여비 규정

인사12500-264('96. 2. 2) :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비조례개정 표준안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중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